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 도 자 료 7월 31일(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후 보도			
배 포 일		2020. 7. 31.(금) / (총 9매)			
보 건 복 지 부	기초생활 보장과	과 장	설 예 승	전 화	044-202-3051
		담당자	강 태 수		044-202-3054
	기초의료 보장과	과 장	이 영 재		044-202-3090
		담당자	이 원 의		044-202-3094
국 토 교 통 부	주거복지 정책과	과 장	김 석 기	전 화	044-201-4504
		담당자	김 대 영		044-201-3358
교 육 부	교육복지 정책과	과 장	장 미 란	전 화	044-203-6526
		담당자	신 동 진		044-203-652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8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6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 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 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 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2021			
급여 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 항목	활용	지 원 금 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 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38.8% ↑
	중	212,000원			중	376,000원	27.5% ↑
	고	339,200원			고	448,000원	6.1% ↑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고	83,000원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 · 교육부 · 기재부 · 행자부 · 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2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
		이병희	노동연 선임연구위원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익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승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임연기	공주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붙임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3개 사업(2020년 기준)

- (소관부처) 고용부 6개, 교육부 7개, 보건처 6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4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0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 자료 출처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 지원(정착지원금)	
7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8	국가장학금	
9	급식비	
10	(기초생활) 교육급여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평생교육바우처	
1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처
14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7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8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9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국토교통부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법무부
23	법률구조 제도	
24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26	(타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29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0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2	발달재활서비스	

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5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6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37	언어발달지원	
38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39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0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41	장애(아동)수당	
4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44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5	장애인 연금(차상위)	
4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8	재난적 의료비 지원	
4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51	지역아동센터 지원	
52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3	차상위계층 확인	
54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55	치매 검진 지원	
5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59	산림서비스 도우미	
60	산림재해 일자리	
6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3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4	미혼모·부 초기지원	
65	아이 돌봄 서비스	
66	청소년특별지원	
6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8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1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3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